

【 11 】 양주군공수의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6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1905호 ('89.5.11)에 근거 지방공수의를 위촉하여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1. 관내 개업중인 수의사중에서 군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. (안 제2조)
2. 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안 제4조)
3. 군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안 제5조)
4. 공수의는 매월 2회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안 제6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공수의조례안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양주군공수의(이하 "공수의"라 한다)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군수는 관내에서 개업중인 수의사 중에서 군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. (다만, 도지사가 위촉한 도 공수의는 대상에서 제외)

제3조(업무내용)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
 2.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
 3.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
 4.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
 5.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
 6.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

제4조(위촉기간) ①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 교수는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될 수 있다.

제5조(수당)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도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) ①공수의는 매월 2회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(별표1)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
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표 2의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이 조례 윤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[12]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6